

# KOSIGN 2022 참가신청 계약서

## 1 신청/계약자

업체명	국문	영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우편물 수령 주소	□□□-□□□	
담당자명		부서 및 직위
전화	사무실	휴대전화
담당자 이메일		팩스
주요출품품목	국문	영문
주요출품품목		웹사이트

\* 상기 사항 중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KOSIGN 2022 사무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의 이메일은 "코사인 온라인"의 아이디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담당자가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2 전자세금계산서 수령자 정보 (상동 □)

수령인		부서 및 직위
전화	사무실	휴대전화
		세금계산서용 이메일

\* 상기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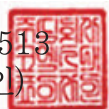
## 3 참가신청/계약내역

참가 구분	부스구분 (a)		부스단가(b)	참가비(a*b)	부가가치세	합계
일반 참가업체	독립	( )부스	₩ 2,600,000			
	조립	( )부스	₩ 3,000,000			
	프리미엄	( )부스	₩ 3,500,000			
전년도 참가업체 (10% 할인)	독립	( )부스	₩ 2,340,000			
	조립	( )부스	₩ 2,740,000			
	프리미엄	( )부스	₩ 3,240,000			
조기신청 업체 (15% 할인)	독립	( )부스	₩ 2,210,000			
	조립	( )부스	₩ 2,610,000			
	프리미엄	( )부스	₩ 3,110,000			

\* 할인은 중복되지 않으며, 참가업체의 최대 할인율은 15%입니다.  
\* 조기신청은 2022년 6월 30일 까지입니다.  
\* 전년도 참가업체라 함은 KOSIGN 2021 참가업체를 지칭함  
\* 1부스: 3m X 3m = 9㎡(약 2.7평)  
\* 독립부스 최소 신청 단위: 2부스 이상, 부스 최대 높이: 4.5m  
(부스 위치에 따라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나, 부스디자인시 위치 및 높이제한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납입처: 신한은행 / 140-000-113217 / 예금주: (주)코엑스

당사는 본 계약서 뒷면의 "KOSIGN 2022" 전시회의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수락하고,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주)코엑스 대표이사 (인)



2022 년 월 일  
업체명 (인)  
대표자 (인)

(본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은 전자지(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합니다.)  
\*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

##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본 신청/계약서 상에 명시된 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코엑스",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를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참가업체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전시 개막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 개막일로부터 30일 전 이내에 참가 신청을 취소할 경우 기 납부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3. 참가업체가 잔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참가업체가 참가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 제반비용 미납시, 주최자는 완납시까지 선택적으로 해당 참가업체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 제3조 전시 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전시장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 분야별 전시관을 배정하며 부스 배정은 참가자가 희망하는 전시관별로 참가신청 접수순서(참가비 입금 순)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최자는 효율적인 전시 주치를 위해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참가업체는 지면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 규모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가 지정한 범위(높이) 이상 초과할 수 없다.
3.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업체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참가업체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분할 수 있다. 주최자는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한다. 참가업체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 제6조 전시품 제한 및 전시실 관리

1. 참가업체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품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2. 참가업체는 상주요원을 전시 부스에 배치하여 부스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 참가업체의 활동은 해당된 면적 이내이어야 한다.
4. 전시품의 분실 및 훼손,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5. 참가업체가 주최자 또는 타 참가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시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7조 중량물 제한

1. 전시장 지반 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이 제한된다.
2. 1개의 전시품이 1㎡당 1톤(ton) 이상일 경우와 총 중량이 5톤(ton) 이상인 경우에는 주최자 및 전시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 전시부스 양도의 금지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 참가취소 및 규모 변경에 따른 위약금

1. 참가업체가 약정한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참가업체는 즉시 주최자에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하기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또는 규모 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시 추가납입 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참가신청일이 전시개막일 90일 이내일 경우, 신청 일자로부터 하기 해당기간 위약금 적용을 받는다.
  - A. 참가 신청일~90일 전 :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축소할 경우 축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B. 전시개막일 31일~90일 전 :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70%를, 축소할 경우 축소분의 6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C. 전시개막일 30일 이내 : 참가비 또는 축소비의 100%를 위약금 (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3. 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막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업체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자가 정한 관계 규정과 주최자가 적용하는 관계 법규에 따른다.

## 제12조 분쟁해결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 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제13조 청렴계약 이행

주최자와 참가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